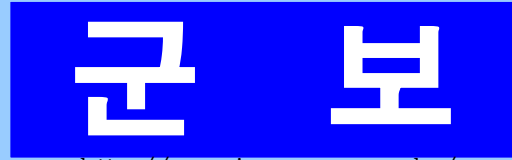


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



<http://www.jeongseon.go.kr/>

제288호 2013. 2. 20. (수)

【공 고】

- 강원도 공고 제2013 - 137호 2013년 강원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
한도액 공고 1
- 정선군 공고 제2013 - 107호 농지처분명령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· 3
- 정선군 공고 제2013 - 108호 농지처분명령유예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
공시송달 공고 4
- 정선군 공고 제2013 - 118호 「정선 아리랑·5일장 특구」 지정 및 특구계획
변경(안) 공고 5

공 고

강원도 공고 제2013-137호

2013년 강원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공고

영유아보육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강원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2월 15일

강 원 도 지 사

- 공고명 : 2013년도 강원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
- 적용일 :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함
-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내용
 - 2013년 보육료 수납한도액

영유아 연령별		정부지원 어린이집	정부미지원시설 (매월/원)		
			민간보육	가정보육	비 고
만 0 세		394,000	394,000	394,000	
만 1 세		347,000	347,000	347,000	
만 2 세		286,000	286,000	286,000	
만 3 세		220,000	253,000	268,000	
만4 ~ 5세		220,000	235,000	257,000	
장애아동 (0~12세)	지정요건 준수	394,000	394,000	394,000	
	“미준수 시설	연령별 정부지원시설 정부보육료 지원단가			

※ 정부미지원시설 : 기본보육료가 제외된 금액임

- 2013년 보육료 수납한도액

구 분	방과후	시간연장	야간	24시간	휴일	시간제
정 부 지 원	만4세 정부지 원단가 50%	시간당 2,700원	정부지원단 가 100%	정부지원단 가 200%	일보육료 ×150%	시간당 3,000원
정 부 미 지원	만4세 수납한 도액 50%	“	수납한도액 100%	수납한도액 200%	“	“

- 필요경비 수납한도액

항 목	내 역	수납주기	수납한도액	비 고
입학준비금	생해보험료, 원복, 체육복 등	연	신입생 : 70,000원 재학생 : 30,000원	
특별활동비	강사인건비 및 교재교구 구입비	월	70,000원	
현장학습비	현장학습비, 수련회비, 견학비	분기	30,000원	
차량운행비	통학차량 이용시 한정	월	15,000원	
행사비	입학, 졸업 등 행사시 개인용 앨범비 등	연	50,000원	신설

정선군 공고 제2013-107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농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기간 : 2013.02.14. ~ 2013.03.01.(15일간)
2. 공고내용 : 농지처분명령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
3. 공고근거 : 농지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
4. 농지처분명령 내역

처 분 명 령 대 상 농 지						대 상 자		처분사유	반송사유
군	읍면동	리	지번	지목	면적(m ²)	주소	성명		
정선군	정선읍	용탄리	1246	전	1,980	인천시 부평구 장제로159번길 20, 303호(계림씨티빌)	박지현	휴경	주소불명
정선군	정선읍	용탄리	1373	전	7,431	서울시 강남구 학동로26길 39, B동101호(논현동)	이태화	휴경	“
정선군	화암면	호촌리	492-1	전	5,189	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45, 701호(동문그린씨티@)	전정수	휴경	“
정선군	임계면	송계리	41	전	1,306	서울시 영등포구 도림천로11길 6-7	유석근	휴경	“
정선군	임계면	문래리	149	전	4,390	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155번길20-2(신흥동)	남형준	휴경	“

5. 농지의 처분명령기간 : 2012.12.28 ~ 2013.06.27 (6개월)

6. 농지처분 명령 사 유 :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처분 의무 미이행

※ 기한내 당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농지법 제62조에 의거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됨.

7. 기타사항

-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선군 농업축산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간 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행정조치 할 계획 임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농업축산과 농지담당자(☎ 033-560-237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3. 2. 13.

정 선 군 수

정선군 공고 제2013-108호

농지처분명령유예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농지처분의무통지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2조(처분명령의 유예)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유예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주소불명 및 폐분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기간 : 2013. 02.14 ~ 2013.02.28(15일간)

2. 농지처분명령대상자 내역

처분명령 대상농지 내역				농지처분명령 대상자		반송사유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m ²)	주 소	성명	
정선군 정선읍 덕송리	400	전	2,463	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관동길, A동304호 (와이키키사원주택)	김기목	주소불명
	401	전	7,567			
정선군 임계면 반천리	680	전	2,674	인천시 남동구 경인로659, 505호 (간석동,태형오피스텔)	차준상	주소불명

3. 농지의 처분명령 유예사유 : 농지법 제12조 제1항(처분명령의 유예)/ 본인 자경

4. 농지의 처분명령 유예기간 : 2012.12.28 ~ 2015.12.27

5. 안내사항

- 농지처분명령유예기간(3년)에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처분 의무가 소멸되며, 농지처분명령유예기간(3년)에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,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유예한 농지처분명령을 받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농업축산과(☎033-560-237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3. 2. 14.

정 선 군 수

정선군 공고 제2013-118호

『정선 아리랑·5일장 특구』 지정 및 특구계획변경(안) 공고

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·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선 아리랑·5일장 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 변경(안)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아래 특구계획변경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2013. 2. 18.

정 선 군 수

1. 특구의 명칭 · 위치 및 면적

- 명칭 : 정선 아리랑·5일장 특구
(Jeongseon Arirang · 5-day Market Cultural Heritage Zone)
- 위치 : 정선군 (9개읍·면 일원)
- 면적 : 992,225㎡ (중 17,150㎡)

2. 특구변경 지정 필요성

- 현재 정선 아리랑 특구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약975km²의 넓은 면적을 대상으로 7가지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, 이들 사업은 정선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정선 5일장이라는 성장동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.
- 정선5일장은 매년 성장세를 보이면서 정선군 발전의 핵심 아이টে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, 이제 정선읍을 벗어나 정선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가야 할 시점에 와 있음.

- 정선군을 방문하는 연간 관광객은 2012년 총 920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, 5일장 특구조성을 통한 주요 지역의 중심상업거점 활성화를 유도, 실제 관광수익효과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음.
- 정선 아리랑 특구와 정선 5일장과의 연계성을 감안할 때, 정선 아리랑 · 5일장 특구라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사업형태로 전환시켜, 보다 효과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, 아울러 지역균형발전과 자립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읍면 거점의 부활을 도모할 필요성이 큼.

3. 특화사업의 내용

[당 초]

- 정선아리랑 창조공간 조성 사업
 - － 정선아리랑 전시공연센터 건립, 정선아리랑 테마거리 조성
- 정선아리랑 상품화 사업
 - － 정선아리랑 복합문화관광상품 개발사업, 정선 지역특산물 상품화사업
 - － 정선아리랑 테마열차 트레일 확장 사업
- 정선아리랑 콘텐츠 사업
 - － 정선아리랑 명품 글로벌화 사업, 정선아리랑 공공화 사업

[추가사업]

- 정선5일장 활성화 사업
 - － 정선문화관광형 시장육성, 여량 5일장터 조성

4.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명 : 강원도 정선군수 최승준
- 주소 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

5.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(변경내용 없음)

- 아리랑 고개(옛길) 조성을 위한 국유림 임도설치 및 대부허가, 영구시설물 설치에 따른 특례적용
 - ⇒ 특례법 제27조 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
 - ⇒ 특례법 제27조의 3 -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

- 아리랑 막걸리 주조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농민주 제조면허 허가에 따른 특례적용
⇒ 특례법 제36조의 3 - 「주세법」에 관한 특례
- 정선 지역특산물 상품화 사업을 위한 지리적표시제 등 우선심사 특례적용
⇒ 특례법 36조의 5 - 「농산물 품질관리법」에 관한 특례
- 정선 지역특산물 상품화 사업을 통해 생산된 상품에 표시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례적용
⇒ 특례법 43조 - 「식품위생법」에 관한 특례

6. 특화사업의 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방법

- 총 사업비 : 468억원 (증 15억원)
 - 국비 127억원 (증 9억원), 지방비 341억원 (증 6억원)
 - ※ 본 사업비는 사업규모 확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.
- 시행방법 : 특화사업자인 정선군수가 시행

7. 특화사업의 사업시행 기간 : 2013년 ~ 2020년

8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및 의견제출 장소

- 열람방법
 - 홈페이지(<http://www.jeongseon.go.kr/>) ⇒ 행정정보 ⇒ 군정소식 ⇒ 공고/고시
⇒ 정선 아리랑·5일장 특구 변경계획(안)
 - 정선군청 동계올림픽지원단
- 의견제출
 - 우 편 : (233-701)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60 정선군청 동계올림픽지원단 총괄지원팀(☎ 560-2086)
 - Fax : (033)560-2925

9.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: 2013. 02. 25 ~ 03. 10

10. 공청회 개최 공고

가. 목 적 : 정선 아리랑· 5일장 특구 변경계획(안)에 대한 관계 전문가 및 주민들의
다양한 의견을 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함.

나. 일 시 : 2013. 3. 6(수) 14:00

다. 장 소 : 정선읍사무소 대회의실

라. 특구계획(안) 개요 : 정선군 홈페이지 “공고/고시”란 참조